

의안번호	2216473
의 퇴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6.3.27.
추계번호	26D05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각종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등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2억 3,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94억 6,200만원(연평균 18억 9,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각종 계획 수립	171	-	-	-	-	171	34
갯벌관리위원회 설치	4	7	7	7	7	32	6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1,064	1,975	2,023	2,073	2,124	9,259	1,852
합 계	1,239	1,982	2,030	2,080	2,131	9,462	1,892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5조의2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보에 고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가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농업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25조의3 (농지보전부담금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을 조성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 1)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안 제25조의5 (청년 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 한 특례)	-전북자치도는 청년농어업인 연령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청년농어업인 연령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25조의6 (고령 은퇴 농업 인 연금제 도입 에 관한 특례)	-전북자치도는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를 도 입할 수 있으며, 국가는 연금도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25조의7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¹⁾ 에도 불 구하고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25조의12 (국가축산클러스 터 지원·육성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축산법」 제32조의2제1항 ²⁾ 에도 불구하고 국가축 산클러스터를 계획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 지사가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위센터 설립할 경우 행정·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25조의13 ~안 제25조의 14(농수산물 유 통 활성화 지원 에 관한 특례 등)	-도지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선진 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농 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연 계되어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도지사는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30조의2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 례)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수 소특화단지의 기반조성,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안전관 리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32조의2 ~안 제32조의 5(신·재생에너 지 산업 발전 및 발전시설 설치 등)	-국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국가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 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10	안 제41조의4 (전북미래전략산 업의 육성 및 지 원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가 미래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11	안 제41조의5 ~안 제41조의6 (미래산업 전환 촉진지구의 지정등)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미래모빌리티 등을 위 하여 미래산업 전환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 된 촉진지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안 제41조의7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도지사는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등을 목적으로 산업계와 대학 간의 협력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13	안 제41조의9 (창업 집적 시범 지구의 지정·운영)	-도지사는 창업생태계활성화 등을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14	안 제41조의10 ~안 제41조의 13(탄소중립 선 도도시 지정 등 에 관한 특례 등)	-도지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탄소융복합 미래신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조세감면 등을 제공할 수 있음 -국가는 전북자치도에 청정대기, 자원순환사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으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 기술 고도화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국가는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전후방 산업의 연계 육성을 위하여 탄소융복합 미래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우선 지원하여야 함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전북의 탄소 산업과 연계한 미래 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15	안 제41조의14 (소프트웨어진흥 시설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16	안 제41조의15 ~안 제41조의 17(소재·부품· 장비산업 특화단 지의 지정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하며,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전북자치도에 반도체 및 방산클러스터와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반도체 연구센터로 지정된 연구기관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7	안 제43조의2 (문화산업진흥시 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진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제12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18	안 제43조의4 (전북자치도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특례)	-국가는 도지사가 이스포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경우 해당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9	안 제46조의4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0	안 제46조의5 (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글로벌 의료관광특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특구 내에 국제진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환자의 입·출국 등을 지원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위한 행정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재량규정
21	안 제49조의3 ~안 제49조의4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등)	-도지사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전북자치도를 갯벌생태관광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해당 갯벌등의 지역을 갯벌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음	재량규정
		-국가는 도지사가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갯벌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전북자치도에 갯벌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의무규정
22	안 제49조의6 (전북자치도 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유인도서를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도지사가 개발대상섬을 지정하였을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23	안 제61조 ~안 제61조의2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등)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 지정 또는 지정해제 등의 권한을 도지사에 이양하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4	제67조의3(새만금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도지사는 새만금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도지사는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및 설비 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5	안 제74조의2 ~안 제74조의6 (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	-국가는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용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음 -전북자치도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재산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 -국가 또는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정부는 시장의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10년간 감면하여야 함	의무규정
26	안 제74조의9 ~안 제74조의13(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등)	-국가는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전북자치도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액 외에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³⁾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지원금액 외에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북자치도에 사업장을 신설·증설, 연구개발 등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현금지원 외에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국가유공자와 고령자를 채용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7	안 제77조(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술개발, 실증 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28	안 제83조의3 ~안 제83조의4 (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등)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청년유출을 막고,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청년창업기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9	안 제83조의6, 안 제83조의8 (국·공립 정신병 원의 설치 특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료 인프라 운영에 드는 비용·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30	안 제84조의3 (전통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 한 특례)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국가는 도지사가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경 우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31	안 제84조의5 (환경친화적 자 동차 전용주차구 역 등 지상설치 지원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 용을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32	안 제114조 ~안 제115조(조 세의 감면 등)	-국가 또는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 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국가 또는 도지사는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 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 ·취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33	안 제117조(개 발사업지구 인근 지역의 지원)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 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용 자 또는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34	안 제132조(역 세권 개발에 대 한 국유재산 특 례)	-국가는 역세권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하여서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5	안 제139조(민 간투자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민간투자를 원활 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농지보 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하거 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재량규정
36	안 제145조(여 객자동차운송플 랫폼사업자 재정 지원 특례)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플 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 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국도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 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 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재량규정

37	안 제149조 ~안 제150조(대중교통 운영 지원 등)	-국가는 도지사가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하여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교통물류거점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38	안 제155조의3 (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하부행정기구의 설치 등의 사항은 도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39	안 제155조의5 (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전북자치도의 소방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소방본부장을 소방정감으로 보함 -소방업무 수행과 소방본부 등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40	안 제159조의2 (광역생활권의 운영)	-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북자치도와 연합 간의 기능과 사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는 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41	안 제167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도교육감은 국공립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42	안 제170조의2 ~안 제170조의6(영재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등)	-전북자치도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 -전북자치도는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학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음	재량규정
		-전북자치도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함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함 -도지사는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도지사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였을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43	안 제171조의2 (국가의 재정지원)	-국가는 전북자치도내 시·군의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직·간접비용, 전북자치도내 시·군의 교통 연계·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44	안 제171조의5 ~안 제171조의 8(통합자치단체 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등)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상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전북자치도 내 시·군 통합에 따른 통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 의 시·군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 야 함	의무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 터 10년간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매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 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 -교육부장관이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 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 의 100분의 25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 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	재량규정
45	안 제171조의14 ~안 제171조의 15(자치경찰에 관한 재정지원 등)	-국가는 전북자치도가 자치경찰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46	안 제183조(의회 정책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의원 정수 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 전 문인력을 둘 수 있음	재량규정
47	안 제184조(의정 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도조례 로 정하고,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활동비심의 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5조의2(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정책의 내용,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	안 제25조의3(농지 보전부담금 특례)	×	부담금 감면의 대상이 되는 사업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
3	안 제25조의5(청년 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연령 조정의 내용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4	안 제25조의6(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연금 도입의 내용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5	안 제25조의7(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0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미대상: 기본계획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계획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안 제25조의12(국가 축산클러스터 지원·육성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정책의 내용,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7	안 제25조의13 ~안 제25조의14(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정책의 내용,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8	안 제30조의2(수소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정책의 내용,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9	안 제32조의2 ~안 제32조의5(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및 발전시설 설치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정책의 내용,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0	안 제41조의4(전북 미래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정책의 내용,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1	안 제41조의5 ~안 제41조의6(미래 산업 전환 촉진지구의 지정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2	안 제41조의7(미래 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정책의 내용,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3	안 제41조의9(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 정·운영)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4	안 제41조의10 ~안 제41조의13(탄 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	0	(미래 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	(행정·재정적 지원 관련)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5	안 제41조의14(소프 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6	안 제41조의15 ~안 제41조의17(소 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7	안 제43조의2(문화 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문화산업진흥 시설 지정 및 이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8	안 제43조의4(전북 자치도 이스포츠 진 흥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진될 시책의 내용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9	안 제46조의4(인구 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0	안 제46조의5(권역 별 글로벌 의료관광 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특구 내 국제진료지원센터 설치 규모 및 행정 편의 지원에 소 요될 재정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
21	안 제49조의3 ~안 제49조의4(갯벌 관리구역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례 등)	×	(재정적 지원 관련)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0	(갯벌관리위원회 구성)
22	안 제49조의6(전북 자치도 유인도서 개 발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정책의 내용,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3	안 제61조 ~안 제61조의2(산림 문화·휴양·복지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연휴양림 지정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내용 및 이에 수반되는 지원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24	제67조의3(새 만금 외국인 자녀 전용 어 린이집의 설치)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의 설치 규모, 이용 아동 수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5	안 제74조의2 ~안 제74조의6(투자 진흥지구의 자금 지 원 등)	×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정책의 내용,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6	안 제74조의9 ~안 제74조의13(지 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 례 등)	×	지원의 대상이 되는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27	안 제77조(전북첨단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8	안 제83조의3 ~안 제83조의4(청년 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29	안 제83조의6, 안 제83조의8(국·공 립 정신병원의 설치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0	안 제84조의3(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례)	0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행정·재정적 지원 관련)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1	안 제84조의5(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등 지상설 치 지원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2	안 제114조 ~안 제115조(조세의 감면 등)	×	조세감면 대상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33	안 제117조(개발사 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 지원 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4	안 제132조(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및 사업별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5	안 제139조(민간투자 부담금 등의 감면)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6	안 제145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부담금 등) 안 제145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7	안 제149조 ~안 제150조(대중교통 운영 지원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8	안 제155조의3(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 등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조직의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
39	안 제155조의5(소방조직에 관한 특례)	×	도지사 직속 소방본부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조직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40	안 제159조의2(광역생활권의 운영)	×	전북자치도와 연합 간의 기능과 사무 조정 범위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필요한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41	안 제167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	국공립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수당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
42	안 제170조의2 ~안 제170조의6(영재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43	안 제171조의2(국가의 재정지원)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44	안 제171조의5 ~안 제171조의8(통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등)	—	미대상: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통합한 국가 재정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5	안 제171조의14 ~안 제171조의15(자치경찰에 관한 재정지원 등)	—	미대상: 국가와 특별자치도 간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통합한 국가 재정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6	안 제183조(의회 정책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0	
47	안 제184조(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25조의7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안 제41조의11에 따른 미래 신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안 제84조의3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 추계에 활용한 2024년 대전광역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금액을 준용함
 - 개정안의 각 계획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여 추계 첫해인 2026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49조의4에 따른 갯벌관리위원회의 경우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고, 추계기간 동안 수당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 갯벌관리위원회는 연간 2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민간위원 수는 전체 위원 20명 중 12명으로 가정
 - 위원회 민간위원의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30만원⁴⁾으로 가정
- 안 제183조에 따른 전북자치도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 정수만큼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6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함
 - 현행법령⁵⁾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의회의원 정수만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면, 증원 가능한 정책지

4)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만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만원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5)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원 전문인력은 총 20명임

[표 2] 개정안에 따라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

(단위: 명)

구 분	의원정수	현행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증원 가능 정책지원 전문인력 수
전북자치도의회	4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6급의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⁶⁾의 평균인 72,157천원을 적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
- 증원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공간은 기존 지방의회 청사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효율, 1인당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⁷⁾을 적용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하고, 2026년의 경우 인건비는 6개월분만을 반영함

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6급(상당)	86,606	57,708

7)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효율, 1인당 자산취득비(2025.11.)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기관부담금(%)	13.067	13.129	13.193	13.285	13.379	13.475
1인당 자산취득비(천원)	4,980	5,078	5,180	5,283	5,389	5,4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각종 계획 수립(안 제25조의7, 안 제41조의11 및 안 제84조의3)

□ 안 제25조의7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안 제41조의11에 따른 미래 신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안 제84조의3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 대전광역시의 “대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금액 5,700 만원을 준용하여 추계함⁸⁾

○ 추계의 전제에 따라 각 계획은 수립주기를 5년으로 하고, 추계 첫해인 2026년에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등 3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1억 7,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각종 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57	-	-	-	-	57
미래 신산업 육성 종합계획	57	-	-	-	-	57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57	-	-	-	-	57
합 계	171	-	-	-	-	17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갯벌관리위원회 설치(안 제49조의4)

□ 추계의 전제에 따라 갯벌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12명으로 하고, 회의 참석수당은 30만원으로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에 따라 갯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00만원 등 5년간 3,200만원으로 추계됨

8)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471)」에 대한 비용추계서 상 계획 수립 비용

[표 4] 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수당 지급 횟수	갯별관리위원회 (12명×연 2회, a)	12	24	24	24	24	108
	회의참석수당(b)	0.3	0.3	0.3	0.3	0.3	0.3
	계(a×b)	4	7	7	7	7	32

주1: 제정안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이므로, 2026년 갯별관리위원회 회의개최횟수는 1/2만 반영

주2: 단수 조정에 따른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안 제183조)

-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상당의 2026년 연봉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평균한 연간 평균연봉은 7,216만원임
- 추계 결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20명 증원에 따른 보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억 2,200만원 등 5년간 68억 4,900만원으로 예상됨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제정안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이므로 2026년은 6개월에 해당하는 보수만 반영

[표 5]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보수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기준			2026 (6개월)	2027	2028	2029	2030	합계
1인당 보수 (a)	증원 인원 (b)	연간 총액 (a×b)						
72	20	1,443	722	1,478	1,513	1,549	1,587	6,849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보수에 연동되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연도별 부담률을 적용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400만원 등 5년간 9억 600만원으로 예상됨

[표 6]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기관부담금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관부담금	94	194	200	206	212	9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인력운영비 대비 기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율(20.5%⁹⁾)을 보수총액에 적용하면,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4,800만원 등 5년간 14억 400만원으로 예상됨

[표 7]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본경비	148	303	310	318	325	1,40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자산취득비) 증원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2026년에 채용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자산취득비도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원으로 예상됨

[표 8]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자산취득비	100	-	-	-	-	1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9) 인력운영비 39조 6,999억원, 기본경비등 8조 1,503억원(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 총규모에 대한 순계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0억 6,400만원 등 5년간 92억 5,9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9]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보수	722	1,478	1,513	1,549	1,587	6,849
기관부담금	94	194	200	206	212	906
기본경비	148	303	310	318	325	1,404
자산취득비	100	-	-	-	-	100
합 계	1,064	1,975	2,023	2,073	2,124	9,25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각종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2억 3,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94억 6,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각종 계획 수립	171	-	-	-	-	171
갯벌관리위원회 설치	4	7	7	7	7	32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1,064	1,975	2,023	2,073	2,124	9,259
합 계	1,239	1,982	2,030	2,080	2,131	9,46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